



국내 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세계 화장품 시장

최근 5년 연평균 약 6% 성장

* 국내 화장품 시장('23)

보건산업 분야에서 수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시장 규모
127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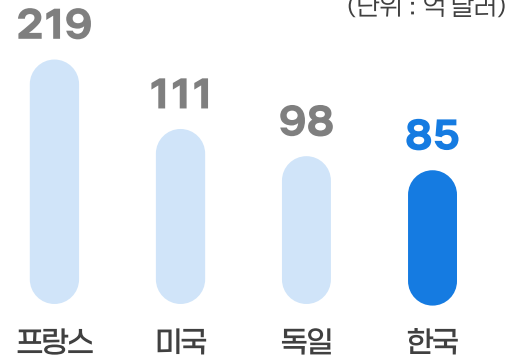
세계 9위


 수출액
85억 달러

세계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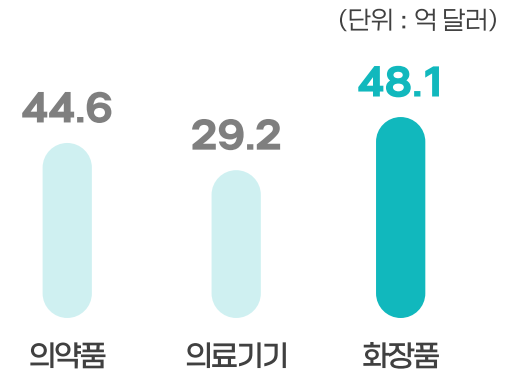
세계 화장품 수출국 순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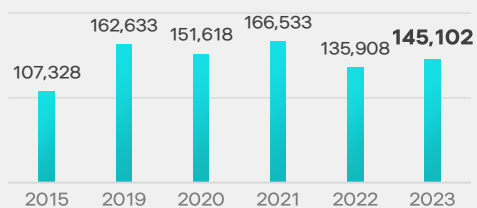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24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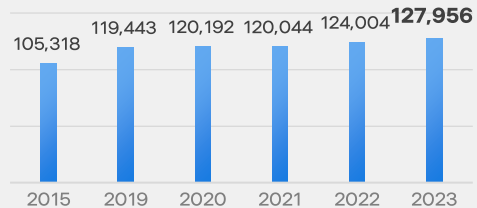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23년 국내 생산액 14조로 '15년 10조 기록 후 연 평균 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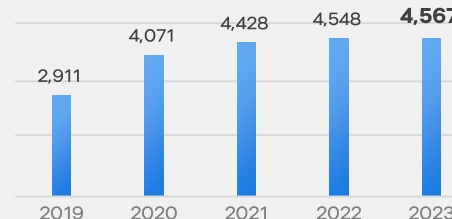
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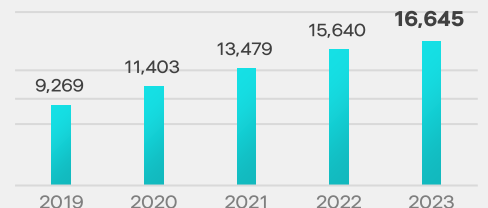
생산품목

국내 화장품 영업자 수

'19년 대비 제조업체 56.8%, 책임판매업체 79.5% 증가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역대 최대 3분기 누적 수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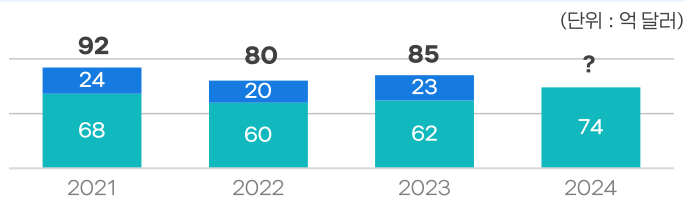
한류 영향의 K-뷰티 인지도 상승, 중국 중심 → 美·日·EU 등으로 시장 확대

3분기 누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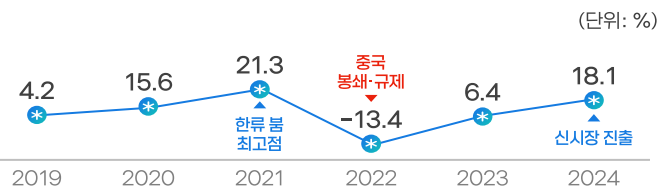
'24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74억 달러
전년 동기(62억 달러) 대비 19.3% 증가

역대 최대 3분기누계 실적 달성

연도별 및 3분기까지 누적 수출 실적



연도별 화장품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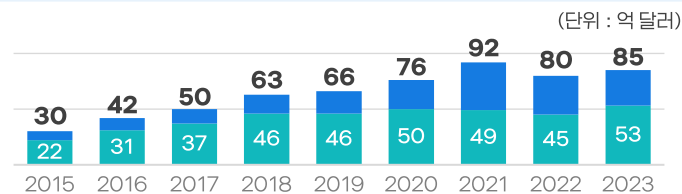


중소기업 수출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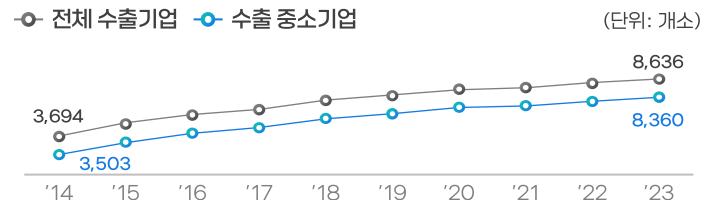
'23년 화장품 총 수출액 85억 달러 중
중소기업 제품 53억 달러(63%) 차지

역대 최대치 기록

연도별 화장품 전체 및 중소기업 수출 현황



연도별 화장품 수출 기업 수 추이



수출시장 다변화

화장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최근 지속 감소

미국·일본·유럽 등 기타 지역 수출 증가 추세



* 중국

자국 화장품 선호(애국소비), 수입규제 강화 등 환경변화와 함께 수출 지속 감소



* 미국

'24년 들어 수입 기초화장품 중 한국 화장품 비중이 1위 차지(전체 품목에서 비중 4위)



* 일본

'22년 일본 수입화장품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이후 '23년까지 2년 연속 1위 유지

최근 주요 해외 실태조사 및 글로벌 유통망 동향에서 한국화장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인지도 및 인기 확인

해외한류 실태조사

한국 문화 콘텐츠 11종에 대한 세계 26개국 조사('23년)

**한국 뷰티제품이 7개 평가항목 중
인기도, 소비 비중, 호감도, 유료이용 의향의 4개 항목에서 각 2위 차지**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국가 미주 5개국, 유럽 7개국, 아시아·태평양 10개국, 중동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 * 조사기간 2023년 11월 10일 ~ 11월 30일
- * 조사대상 해외 26개국 만 15~59세 현지인 중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표본규모) 총 25,000명 / 국가별 700명 ~ 1,600명
- * 표본오차 95% 수준에서 전체 $\pm 0.62\%$, 국가별 $\pm 2.45\sim 3.70\%$

주요 화장품 수출국 수출 증가 기대 요인

미주

K-콘텐츠 경험 증가
제품 인지도 및
구매 의사 상승 기조

동남아시아

K-콘텐츠간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패션 및 뷰티 인기 높음

중동

10대·20대 중심으로
K-콘텐츠 확대 뷰티 등
유료 이용의향 높음

유럽

K-콘텐츠의 확대
K-Beauty에 대한
인지도·선호도 증가

글로벌 유통망 인기

해외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판촉행사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 추세 뚜렷

글로벌 온라인 유통채널 판촉행사를 통한 주요 수출 사례

amazon

아마존 프라임데이

'24.7.16. ~ 17.

뷰티 & 퍼스널 케어 부문

한국의 A사 제품
1위~3위 싹쓸이

Qoo10

큐텐 재팬 메가와리

'24.6.1. ~ 6.12

K-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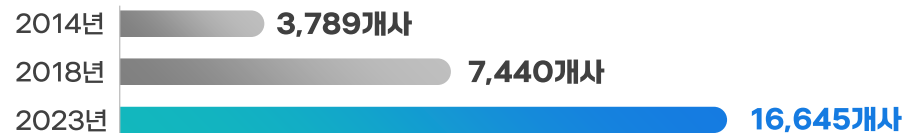
1위~3위 차지

등록 회원수 약 2,300만명 / 여성회원 76%
/10대~30대 회원 69%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선제적 제도 도입으로

독창적 제품 개발 및 창의적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 * 제품 특성에 맞는 관리와 지원을 위해
약사법내에 있던 화장품 규정을 분리하여 화장품법 제정('99)
- * '12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제조시설 없이도 위탁생산이 가능한
책임판매업자 제도 도입, 이후 브랜드사 대폭 증가



- * 금지 원료 외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한 원료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유일한 기능성 화장품 제도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 세계 최초 '맞춤형 화장품'을 제도화하여 운영('20년~)
맞춤형 화장품 전문인력 운영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기반 마련



화장품법 소관 부처, 화장품 영업자 관리 부처로

해외 규제 당국자와 규제 외교 등을 통한 수출지원 추진



규제 당국자 협력

- *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통한 협력 채널 강화로 비관세 수출 장벽 해소 지원
- * 규제 당국자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한 인허가 규제 파악 및 규제 지원



국제 신인도 제고

- * ICCR 정회원국 활동으로 우리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 및 국제 규제 조화 활동('20~)



규제 포럼

- * 주요 수출국의 규제당국자 초청해 국내 최신 기술 도입 제품 개발 동향, 고품질 화장품 홍보 등을 위한 원아시아 포럼 개최('24.10)



해외 규제 정보 제공

- *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의 인허가·표시광고·품질관리 등 화장품 법령·제도에 대한 웨비나 교육 실시



화장품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시장 성장 촉진

- * 천연·유기농화장품 화장품 인증
정부 인증에서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 추진
-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SMOS 등
- * 샴푸, 세제 등 맞춤형화장품 리필 매장 고용 완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 등 수행 허용 추진
- * 국내 화장품 GMP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ISO 22716)과 조화
인증을 준비·관리하는 기업 부담 완화
-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고시) 개정('24.8)



안전과 품질 관리 체계 강화로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

표시 제도 개선

01. 포장을 뜯지 않고도 표시 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 기재 위치를 명확화하는 '화장품법' 개정 완료('24. 2)

기존 포장재 표시 위치를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규정

개정 외부 포장으로 변경

02. 소비자 사용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속눈썹페제 등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 주요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표시 강화 추진('24. 8)

기존 소용량(10mL 이하) 화장품 포장에는 전성분,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 없음

개정 일부 화장품(속눈썹페제, 외음부세정제)에 표시 의무화 규정

광고 관리

화장품에 맞지 않는 사용 방법 광고, 사실과 다른 광고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 과대 광고 관리

CGMP 운영

정부가 제조사에 대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적합 여부를 평가·관리하여 국제 신인도 유지



화장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화장품 세계 최대시장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안전성 등 이슈에 따른 수출규제 강화 추세

중국

위해가능 원료 및 신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자료(정식평가자료) 제출 의무를
모든 제품·원료로 확대('25. 5 시행)

화장품원료 안전성평가 주요 변경사항

평가대상

- * **기존**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에서 정한
 사용허가 원료(대다수)는 간소화 평가, 위해가능
 원료 및 신원료만 정식평가 대상
- * **변경**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를 정식평가

평가내용

- * **기존** (간소화 평가) 원료별 최대 사용가능량 대비 함량,
 방부제 규정 등 기술규범 준수여부, 권위기구 안전성
 판단여부 등만 단순기술
- * **변경** (정식평가) 원료별 기능 및 용도,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자료, 노출평가 결과 등을 자세한 수치로 제시

미국

'모든 유통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의무 신설
 ('22.12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제정, '24.7월 시행)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주요내용

- 화장품 책임자가 안전성에 대한 입증 기록 확인·유지
- 시설 등록, 제품 및 원료 목록 작성 의무화
- 제조시설에 대한 GMP 규정 준수 의무
- 부작용 모니터링 및 보고, 라벨링 표기 규정 강화



유럽

2013. 7월부터 안전성 관련 규정
 (Regulation(EC) No 1223/2009) 시행 중

유럽 규정 주요내용

- 화장품 책임자는 시판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유지
-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기능 및 용도,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자료, 노출평가 등 포함
- 화장품 온라인 등록 포털시스템에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록·관리(자율)



추진방향

01

안전성 평가제 도입으로

소비자 안전과 산업 역량 강화

“

글로벌 규제 대응력 확보를 위해 기업 의견 반영, '안전성 평가제' 도입을 위해 화장품법 개정 추진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 *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협의체 운영
* 식약처 주관, 보건복지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전문가 등 참여
- * 화장품 안전성평가 사례 정보집 마련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등 기술지원, 위해평가 실시 등 정부 주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전담 기관' 설립 추진

해외 전문기관 현황

유럽	 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미국	 Cosmetic Ingredient Review



안전성 평가자 자격기준 마련 등

화장품 안전성 평가 대비를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마련, 단계적 전문인력 양성 추진

주요국 안전성 평가 제도 의무화

유럽	미국	중국
		
2013	2024	2025



가이드라인 제공 및 기술개발 등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 기술 개발 제공 추진

국내·외 안전성 평가 규제 동향 및 안전성 평가 사례 정보집 제작·배포

안전성 평가 항목별 안내서 마련

화장품 유형별 평가 모델과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제공



02

디지털 라벨 법제화 등으로 글로벌 규제 선도

국내 화장품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디지털 라벨 법제화 추진

다양한 포장 · 용기 디자인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법제화 추진

- * 화장품 표시 사항 중 제품명,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하고,
전성분 등 나머지 사항은
전자적(QR코드 등)으로 제공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엄격한 품질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중기부 협업)

지원사항



신규구축

1억원, 총사업비의
50%이내



고도화

1.5억원, 총사업비의
50%이내



GMP 인증확대 지원

국내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24년 교육 및 컨설팅 현황



맞춤형 컨설팅

12회 추진



전문가 양성 교육

4회 추진



추진방향

03

 규제 외교 강화를 통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중국, 아세안 국가 등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협력 통해 국가 간
 규제 조화 및 비관세장벽 지속 해소

* 중국 약감국과 국장급 협력회의('23.5),
 화장품 등 MOU 체결('24.5)

* 미국 FDA 초청 MoCRA 규제 설명회
 ('24.1), FDA 초청 화장품 세미나 및
 간담회('24.7) 개최 등

* 규제담당자 초청·교육

- 수출유망국가*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화장품규제·제도 소개를 통해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ODA방식, '18~)

*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포럼 확대

-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및 산업계간 양자·다자간 규제협력의 장으로 발돋움
- * 공동 발전 위해 협의의 필요한 의제 발굴 및 구체적 협력 결과 도출 추진

* 다자·양자 규제당국간 협력 지속

- ICCR 활동, 주요 수출국 해외 규제기관*과 회의·세미나 등 통한 규제 조화 및 수출 장벽 해소
- * 중국 약품감독관리국, 미국 FDA, 인도네시아 식약청, 필리핀 식약청 등

* 할랄 인증지원 확대

- '26년 인니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 대비 규제당국간 협력 및 국내 화장품 업체 할랄 인증지원 사업('16년~) 지속
- *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할랄 화장품 인증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인증 면제(상호교차인정) 위한 평가 신속 추진 등
- ** '화장품 할랄 인증지원 사업' (인증절차 온라인 교육,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상담회, 인증 희망 업체 컨설팅 등) 지속 추진

* 규제 정보 제공 확대

- 주요국 화장품 법령, 인허가 절차 등 수출 안내서 제작 배포
- * 미국, 캐나다 등(현행화 5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신규 5개국)
-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법령 등 규제 교육 및 인허가 정보 제공 확대
- * 최근 규정 변화가 있는 국가, 신흥 국가 중심의 전문가 강연(연간 15회 이상)
- 대화형 규제 상담 서비스인 생성형 AI 챗봇(코스봇) 서비스 제공(연중, 식약처)

국내 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THANK YOU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